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코타키나발루분관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재외국민 보호 및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3등급 또는 4등급 8명), 경찰 분야 주재관 인력 2명(경감 2명)을 증원하고 통일·안보분야 주재관 인력 1명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감사관 1개 담당관, 재외동포영사실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1년 연장하고,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공관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8등급 공무원의 정원 “67”을 “68”로 한다.

제63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별표 2 계란 및 통일·안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계	343	70	273	33	17	190	33
---	-----	----	-----	----	----	-----	----

통일·안보	6		6		1	5	
-------	---	--	---	--	---	---	--

별표 5 중 총계 “1,432”를 “1,442”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1,412”를 “1,442”로 하며, 9등급 “124”를 “125”로 하고, 8등급 이하 “1,043”을 “1,052”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1)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호 2)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3월 31일”을 각각 “2023년 3월 31일”로 하고, 별표 5의2 제2호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7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별표 5의3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총계	1,434
외무공무원 계	1,434
14등급	13
고위공무원단	222
13등급	2
12등급	4
11등급	7
10등급	17
9등급	125
8등급 이하	1,044

별표 7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제63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구분	총계	특정직	일반직				
			소계	고위공무원단	3·4급	4급	5급
계	2	2					
경찰	2	2					

비고: 경찰분야 특정직 정원 2명은 경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 및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에 관한 특례) 외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7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68명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한시정원) ①~② (생 략)	제63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432</u>	<u>1,442</u>	+10
외무공무원 계	<u>1,412</u>	<u>1,442</u>	+30
·	·	·	
·	·	·	
9등급	<u>124</u>	<u>125</u>	+1
8등급 이하	<u>1,043</u>	<u>1,052</u>	+9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2